

##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

### 1. 관련 기사

- 8.4.(화) 서울신문, “40도 폭염을 뚫는다, 월세 25만원에”

### 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, 지방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(외국인고용법, '26.6.9. 공포)
- '26년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불법·노후숙소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,
- \* 불법·노후 가설건축물 사용을 근절하고 주거 용도의 일반건축물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, 사업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지원(최대 1,800만원 지원)
- 일부 지역(김해, 사천)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이주노동자 주거용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('27년까지 완공 목표)
-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, 불법숙소 적발 시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<br>외국인력수급대응TF | 책임자 | 과 장 | 한은숙 (044-202-7157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형우 (044-202-7735) |